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7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4.

발 의 자:윤준병·부승찬·문대림

박희승 · 김주영 · 박민규

이상식 · 이병진 · 복기왕

이춘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.9% 이하로 정하고 있고,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%로 정하고 있음.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 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,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되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미등록대부업, 이른바 '불법사채'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%에 달하는 등 여전히 법정 최 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사채 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,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. 이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기존 27.9% 이하에서 20%로 명시하고,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하여 초과분이 아닌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,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,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및 제19조등).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27.9"를 "20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"을 "그 이자계약 전부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(종전의 제5항) 중 "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"을 "제4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도 불구하고"로, "지급한 경우 그 초과"를 "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.
- ⑦ 대부업자는 제5항에 의하여 무효인 대부계약에 따라 원본(元本)을 대차한 경우에는 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1조제1항 중 "제6항"을 "제8항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27.9"를 "20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6항"을

"제8항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"를 "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"로, "받은 자"를 "받은 자(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2의2.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

2의3.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워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(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	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
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「중	①
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	
따른 소기업(小企業)에 해당하	
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	
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<u>27.9</u>	<u>20</u>
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	4
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<u>제</u>	<u></u>
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	<u>이자계약 전부를</u>
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	
로 한다.	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
	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대부계
	약의 이자율이 제1항에 따른
	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
	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
	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
	<u>다.</u>
⑤ 채무자가 <u>대부업자에게 제1</u>	<u>⑥</u> <u>제4항에 의하여</u>
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	<u>무효인 약정에도 불구하고</u>

<u>초과하는</u> 이자를 <u>지급한 경우</u> <u>그 초과</u>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 은 원본(元本)에 충당되고, 원 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 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.

<신 설>

⑥ (생략)

제11조(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하여는 「이자제한법」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 터 <u>제6항</u>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.

제15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)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 00분의 27.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 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.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

<u>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</u>
 .
⑦ 대부업자는 제5항에 의하여
무효인 대부계약에 따라 원본
(元本)을 대차한 경우에는 그
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<u>⑧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11조(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
제한) ①
<u>제8항</u>
 .
제15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
제한) ①
<u>20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

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<u>제6</u>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·2. (생략) <신설>

- 3. ~ 5. (생략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3. 제8조 또는 <u>제11조제1항에</u>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를 받은 자
- 4. ~ 10. (생략)
- ③ (생 략)

레8
ŏ}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
이자를 받은 자
2의3.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
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
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
· 1.•2. (현행과 같음)
3 <u>제</u> 11조제1항을
위반하여 <u>받은</u> 자
(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
<u>자는 제외한다)</u> 4. ~ 10. (현행과 같음)